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942호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663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인천광역시조례 제6635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3213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1
○ 인천광역시규칙 제3214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32
○ 인천광역시규칙 제3215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60

훈 령

○ 인천광역시훈령 제1230호 인천광역시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 폐지규정 ····· 73
○ 인천광역시훈령 제1231호 인천광역시우리고장을빛낸얼굴휘장수여규정 폐지규정 ····· 75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197호 승강기 사업자 유지관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처분 공고 ····· 76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771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7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780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 78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21-136호 2021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공고 ····· 86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북부수도사업소공고 제2021-665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87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78호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9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79호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6

회 람								

인천광역시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조 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6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63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남북교류협력”을 “남북교류협력 및 노동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을 “도시재생녹지국”으로, “주택녹지국”을 “해양항공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교통국, 행정국,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을 “교통건설국, 행정국, 도시재생녹지국”으로, “주택녹지국”을 “해양항공국”으로 한다.

제7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호 중 “실업 대책 추진 및 노사 지원”을 “실업 대책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단지 조성”을 “준공된 산업단지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로·교량 및 가로등에 관한 사항

1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건설업 면허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를 제16조의3으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도시재생건설국)”을 “(도시재생녹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건설국장”을 “도시재생녹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경인고속도로”를 “인천대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8. 녹지조성 및 조경,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 및 주택건설·공급·관리,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8.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57조제5호 중 “사용허가(단, 기 조성된 공원시설 구역에 한함)”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59조제5호 중 “사용허가(단, 기 조성된 공원시설 구역에 한함)”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59조의3제5호 중 “사용허가(단, 기 조성된 공원시설 구역에 한함)”을 “사용허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7조의2, 제10조의3에 따른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주택녹지국”을 “도시계획국”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재생녹지국장”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재생녹지국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재생녹지국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재생녹지국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4호가목 중 “주택녹지국(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도시재생녹지국(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해양항공국, 교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주택녹지국(건축계획과, 주거재생과, 도시경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교통건설국, 도시재생녹지국(재생정책과, 재생콘텐츠과, 고속도로재생과, 주거재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으로 한다.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감축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정책의 정무적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제5조, 제7조, 제8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기획조정실
- 도로·교량·가로등 및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건설국 → 교통건설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소규모주택 정비, 녹지조성 및 산림보호,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녹지국 → 도시재생녹지국
- 건축, 주택, 주거복지 및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 주택녹지국 → 도시계획국

나. 기구감축에 따른 주택녹지국 폐지(제5조, 제6조 및 제16조의2)

다.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국' 직제순서 변경을 통한 보좌기능 강화(제5조, 제6조 및 제16조의3)

-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주택녹지국 →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

라.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한 기구명칭 변경(제5조, 제6조, 제13조 및 제15조의2)

- 교통국 → 교통건설국
- 도시재생건설국 → 도시재생녹지국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6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635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336명”을 “7,3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916명”을 “3,92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05명”을 “10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자치구구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350*						
정무직 계	3						
정무직	3	1 (시장)					2 (위원장, 상임위원)
일반직 계	*3,816*						
1급	1				1		
2급	1				1		
2·3급	3	2	1				
3급	*19*	*11*		1	4	3	
3·4급	2	2					
4급	156	95	3	4	16	37	1
5급 이하 소계	*3,627*						
전문경력관 소계	7						
별정직 계	18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8	2	6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93						
연구관	33			25		8	
연구사	160						
지도직 계	29						
지도관	5			5			
지도사	24						
소방직 계	3,291						
소방정	20	10		10			
소방령 이하 소계	3,271						

◇개정이유

국가 주요시책사업 기능보강(반려동물보호, 과거사 진실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 산단재생, 고독사 예방,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스타트업파크 업무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시책 및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정원 14명 증원(제2조)

- 총 정원 : 7,336명 → 7,350명(14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3,916명 → 3,929명(13명 증)

· 의회사무처의 정원 : 105명 → 106명(1명 증)

나. 일반직 정원 증원(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02명 → 3,816명(14명 증)

· 일반직 3급 정원 : 21명 → 19명(2명 감)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611명 → 3,627명(16명 증)

규 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6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13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통기획담당관 및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소통기획담당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및 노동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재생건설”을 “도시재생”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비영리 법인·단체 총괄관리

제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6(노동정책담당관) ① 노동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노동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보좌한다.

1. 노동정책 계획 수립 및 노동현안 지원 총괄

2. 노사화합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3.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4. 노동 관련 단체 지원 및 육성

5. 노사 분규 및 노동쟁의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6.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및 근로자문화센터 지도감독

7.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등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

8. 비정규직 종합대책 총괄·조정

9.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

10.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11.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국제협력담당관, 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화 시책 개발·연구

2. 국제교류협력 사업 종합계획 수립

3. 해외사무소 관리 및 운영

4. 전국시도지사협의회(국제화지원 기능) 지원

5. 국제관계대사에 관한 사항

6. 해외 시정홍보물 제작 및 관리

7. 국제교류 업무추진

8.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9. 국제 학예, 문화, 예술교류 확대

10. 외국어 문서작성, 번역, 통역

11. 해외정보수집 및 관리

12. 민간단체 국제교류 사업지원

13. 국제단체 가입 및 운영

14. 시민명예외교관 및 국제명예자문관 관리운영

15.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 및 관리

16. 국외인사영접 및 안내에 관한 업무

17. 경제단체 해외교류사업 지원업무

18. 유엔기구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19. 인천관광공사의 국제교류 관련 업무 지도·감독

20.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산업정책관, 일자리경제과, 국제협력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노동정책과, 산업진흥과”를 “산업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며, 일자리경제과장, 국제협력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사회적경제과장, 노동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하고”를 “사회적경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7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제37호, 제39호, 제41호 및 제4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5호 중 “관련 사무”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6호를 삭제한다.

37. 산업단지 대개조 추진 관련 업무

39.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관련 업무

41.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관련 업무

42. 산업단지 산업문화공간 대개조 관련 업무

제10조제6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고독사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제3항제2호 중 “여성발전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14.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17.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지원

제10조의2제3항제48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49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성별영향평가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외국인근로자 지원 총괄

제11조제3항 중 “마이스산업과장”을 “도서관정책과장, 마이스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5호 중 “(가칭)뮤지엄파크”를 “뮤지엄파크”로 하며, 같은 항 제32호를 제3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33. 시립미술관 전시시설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34. 시립미술관 특화프로그램 개발

35. 인천N방송 운영 지원

제12조제8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천에코랜드 외 잔여부지 및 주변 간접 영향권지역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제13조의 제목 “(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교통정보운영과”를 “교통정보운영과, 도로과, 건설심사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정보운영과장”을 “교통정보운영과장, 건설심사과장”으로, “철도과장”을 “철도과장,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에 제29호부터 제3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0.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3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32. 보행안전·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33.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

34. 자전거시설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

⑪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통제

2. 도로사업비 예산편성 및 운영

3. 비관리청사업(도로개설 및 포장) 시행인가

4. 접도구역 관리

5. 도로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6.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교차점광장)에 대한 기본방향·계획(설치, 관리 등),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7. 도로유지관리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통제

8. 도로시설 및 부속물 개량, 정비에 관한 업무

9. 「도로법」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노선인정 및 변경과 도로구역결정

10. 지하차도 펌프장

11. 도로대장관리

12. 설해대책 수립

13. 도로표지판 계획수립 및 시행

14. 종합건설본부(도로분야) 지도감독 및 자치구 도로건설에 관한 기술지도

15. 도로·터널 등 소관분야와 관련된 기존 민자유치업무에 관한 사항

16. 광역교통망 계획수립 및 관련 협의

17.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 협의

18. 타 기관·부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중 도로에 관한 사항 협의

19. 도로사업 중장기계획수립 및 투자심사

20. 도로통계

21. 도로조명시설 계획 및 조정

22. 종합건설본부 및 군·구의 도로조명시설 업무지도 감독

23. 타 기관 시행의 도로조명시설 업무협의

24. 도로점용 및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포함)

25. 고속도로 통행요금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6. 지역간 도로이용 합리화 방안 연구 검토

27. 광역교통시설(도로분야)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8. 국유재산(국토교통부 소관), 공유재산(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29. 국소관 건설사업(과년도)에 따른 토지 및 지상물 수용보상

30. 도로 정보화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1. 제2영흥대교 건설에 관한 사항

⑫ 건설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분야의 충무계획 지침 작성과 조정·통제

2.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하도급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3. 지하도로(상가)에 관한 업무

4. 지하상가 위·수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5.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6. 건설업등록 및 일반건설업자 지도감독

7. 골재수급계획 수립

8. 골재채취지구 지정

9. 건설기계관리업무 총괄

10. 건설기계정비업·매매업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11. 건설기계 등록업무 지도감독

12. 건설기술 관리업무

13.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14. 설계심의 지적사항 사후관리업무

15.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16.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시공능력평가 업무

17. 시공평가 및 품질관리점검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

18. 감리업 등록 및 감리업자 지도감독

19. 건설업체 및 감리전문회사 부실 벌점부과 및 누계벌점 관리 업무

20. 건설공사 설계경제성[VE] 검토 시행 및 위원회 구성·운영 업무

21. 대형공사의 기본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도서 검토 업무

22. 대형공사의 신기술, 신공법 활용 및 기술정보지 발간업무

23. 건설공사 신기술 습득 및 전파업무

제14조제3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호봉”을 “공무원 호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공무원 임용시험관리”를 “공무원 등 임용시험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28호를 삭제한다.

14. 공무직 등(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노무, 직무훈련 등 관리·운영 총괄

15. 공무직 등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

제15조를 제16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5조) 제4항제6호 중 “항공산업(드론산업 등) 활성화”를 “항공산업 활성화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드론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및 관련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의3(종전의 제15조) 제7항제3호 중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어항 지정·관리”를 “국가어항 관리, 지방어항 지정·관리·개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행정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어로시설사업”을 “어선안전조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조업 허가”를 “제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근해어업 허가·신고, 연근해어업 허가제도 등에 관한 사항

22. 연평어장 안전조업 대책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의 제목 “(도시재생건설국)”을 “(도시재생녹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재생건설국”을 “도시재생녹지국”으로, “도로과, 고속도로재생과, 건설심사과”를 “고속도로재생과, 주거재생과,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심사과장”을 “녹지정책과장”으로, “도로과장, 고속도로재생과장”을 “고속도로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및 공원조성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경인고속도로”를 “인천대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인고속도로”를 “인천대로”로 “사업”을 “사업계획 및 설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 중 “경인고속도로”를 각각 “인천대로”로, 같은 호 중 “개선사업”

을 “개선사업 계획 및 설계”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경인고속도로”를 각각 “인천대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주거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관한 사항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5.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6. 정비사업 관련 주민소통에 관한 사항
7. 정비사업 자료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정비사업 실무협의회 운영 및 정비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정비구역 구조개선 및 정비기반시설·매몰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11.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정비사업 공공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에 관한 사항
15.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16. 인천형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7.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원도심 골목길 재생에 관한 사항

19. 주택개량 지원 및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

20.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1.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2. 노후건축물 수선 관련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⑩ 녹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녹지행정의 종합기획·정책 개발

2. 도시공간녹화사업과 조경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조정 및 협의

3. 도시·군계획시설(일반·경관광장)에 대한 기본방향·계획(설치, 관리 등),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4. 인천대공원사업소, 월미공원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 및 군·구 도시녹화, 산림 및 양묘 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시유 행정재산(임야, 일반·경관광장) 관리

6. 가로수, 녹지대 및 일반·경관광장 조성·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규모 공지의 녹화 및 조경공사 시행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8. 주변도로변 녹화 및 꽃길 조성 등 가로 녹화에 관한 사항

9. 민간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업무

10. 민간 녹화계약에 관한 업무

11. 도시 숲, 바람길 숲 조성, 미세먼지 저감 및 차단숲 조성 및 관리

12. 산지이용 및 보전산지관리

13. 사방 및 조림사업

14. 임산물 수급

15. 입목 벌채사업

16. 양묘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17. 묘목검사 및 수급조절

18. 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사항

19. 산림통계에 관한 사항

20.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21. 산림보호 및 산림병해충방제

22. 화훼, 잔디 및 수목공급에 관한 사항

23. 도시림 조성 및 푸른 숲 가꾸기에 관한 사항

24. 산림보호구역 등에 관한 사항

25. 임업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6.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27. 산림조합 지도 및 감독

28.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29.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30. 산림복지 및 휴양정책수립 및 기획

31. 산림 교육 및 산림치유에 관한 사항

32. 산림복지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휴양림,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치유의숲, 목재문화체험장, 숲속야영장 등)

33. 산림복지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4. 숲길(등산, 트레킹, 휴양, 치유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수목원·정원 지정 및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36.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7. 수목장림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38.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9. 인천역사·문화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0. 계양산보호위원회 운영

⑪ 공원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종합계획 수립

2. 공원조성 계획의 결정

3. 공원관련 조례 개정 및 사용료 승인업무

4. 도시·군계획시설(공원·녹지: 묘지공원 제외)에 대한 기본방향·계획(설치, 관리 등),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5. 인천대공원사업소, 월미공원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 및 군·구 공원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공원 조성 및 관리

7. 민간공원 추진 및 관리·지도

8.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도시공원 부시 개발행위 특례 추진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무 포함)

9.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에 관한 업무

1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11.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12. 구 도심권 거점 공원녹지확충계획 수립 추진

13. 주제공원(동물원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14. 시유 행정재산(공원, 녹지) 관리

15. 아라천구역 중 공원구역(공원계획구역 포함)의 공원 조성 및 관리

제16조제1항 중 “토지정보과 부대이전개발과”를 “토지정보과, 캠프마켓과, 도시경관건축과, 주택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개발과장 및 토지정보과장”을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토지정보과장, 도시경관건축과장 및 주택정책과장”으로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및 부대이전개발과장”을 “시설계획과장 및 캠프마켓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지정”을 “지정(개발) 및 실시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대이전개발과장”을 “캠프마켓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및 고시 업무

23. 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

24.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25. 산업입지 공급 계획 수립 및 고시 업무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산단재생 업무 제외)

27.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등 도시공업지역법에서 정한 사무

⑩ 도시경관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경관계획 수립

2. 자연, 수변, 시가지, 역사・문화, 도서, 교통・산업, 도로경관 및 야간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각종 경관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형성 및 발전을 위한 제도연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경관위원회 운영 및 지구단위계획 등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6. 각종 개발사업 경관 협의 및 평가, 그 밖에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7. 도시개성창조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경관·미관 등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0.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11. 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경관 관련 비영리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

13.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작성

14. 각종 경관형성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

15. 광고물, 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의 품질도시 관리에 관한 사항

16.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17. 소규모 도시경관 정비에 관한 사항

18. 건축행정 및 건축물 관리 총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9.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건축 정책 및 제도 운영, 건축문화 발전 등에 관한 사항

21. 건축사(사무소) 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2.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3.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4. 지역 공공건축 지원에 관한 사항

⑪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통제
2.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사업자 관리 및 행정처분
4.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5. 주택 정책 및 제도(특수시책) 운영(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 등)
6.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업무 총괄
7. 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제도, 전문가 자문단과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조정 및 자문지원에 관한 사항
10. 주택관리사(부) 자격 등록 및 관리
11. 아파트관리실태 조사·감사 지원에 관한 사항
12. 광역건축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복지 관련 정책과 제도 운영
13. 사회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 및 긴급 주거비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 급여 및 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
14. 희망의 집수리, 주택바우처 사업 추진
15. 공동주택 공동체의 정책참여 제고에 관한 사항
16.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대상지 발굴 및 후보구역 선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18. 영구임대주택(시책사업)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19. 영구임대주택(시책사업) 입주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45조의2제2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1호를 제4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1호부터 제4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부서별 소관업무 직무교육 자체추진)

42.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감찰 종합계획 수립 및 산하 사업소 감사에 관한 사항

43. 상수도 관련 민원조사 및 인터넷 부조리 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44. 상수도사업본부 내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45. 기관 소송에 관한 사항

46. 기관 법령 및 법무에 관한 사항

제45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가치산업”을 “가치산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항(음수대 설치사업 포함)”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개선업무”를 “개선 및 시민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취・정수장 수질관리종합계획”을 “수질관리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배급수계통 수질검사관리”를 “송수계통・배수계통・급수계통 수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5호 및 제28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6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원·정수 및 수질관련 제도 개선 발굴·시행

6. 수돗물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11. 수질오염사고대비 계획수립 및 상수도 수질관리·사고대응 총괄

22. 수질민원업무 총괄(수질민원 처리규정 제정·운영)

36.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7. 환경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취약 시설물 및 상수도 공사현장 안전점검 업무총괄

39. 취수시설·정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40. 정수장 기술진단에 관한 사항

41. 정수공정 개선에 관한 사항

42. 상수도 통계(취·생산량, 수질)에 관한 사항

43. 수질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등 대외협력 업무

제45조의4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사업소”를 “수도사업소(수도시설관리소 포함)”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6호 중 “종합계획수립(고도화 및 개발 등) 및 DB 종합관리”를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0호를 제3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0호부터 제3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미추홀 참물 통합운영센터 운영·유지관리

30. 수운영 관련 시스템 종합계획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수운영(제어, 감시), 수운영 활용,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32. 수운영 시스템 구축 표준화 및 DB연계 지원

33. 상수도관망관리에 관한 사항

34.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35. 시외급수 및 주한미군 급수에 관한 사항

36. 상수도 관로유지관리(밸브류 포함) 지도·감독

37. 배수지 시설관리 지도·감독

38. 미추홀 참물 통합운영센터 연계 관련 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45조의5제2호 중 “도수관”을 “도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송수관”을 “송수시설”로 한다.

제46조제2항제8호 중 “미만”을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소블록시스템 구축 및 해제블록 복원

제46조제3항제4호 중 “이상”을 “초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배수지·블록유량계”를 “송수관, 배수지, 중블록·대블록 유량계”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상수도관(구경 350밀리미터 이상) 이설·개량 계획 수립 및 시행

18. 상수도관(구경 350밀리미터 이상) 지하매설물 협의

19. 송수가압장(배수지 용량 V=5,000㎥ 이상) 유지관리 업무

20. 공동구 내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제46조제5항제7호 중 “및 배수·급수장치”를 “등 배수시설·급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배급수 계통의 수질관리 등 관리대책 연구

13. 배급수설비의 합리적 운용 및 부식에 관한 연구

14. 신종 미량 유해물질 조사

15. 상수도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및 실태조사

16. 조류 및 그 대사물질의 수질기준 및 관리연구

17. 미생물 시험방법 기준 및 오염 관리에 대한 연구

18. 원수·정수 유충조사 및 개선을 위한 연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건축계획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이유

기구 감축에 따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구 감축에 따른 산업정책관 폐지(제8조)

나. 도서관정책과장 개방형 직위 지정(제11조)

다. 교통·도로건설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부서 이관(제13조)

- 도로과, 건설심사과(도시재생건설국→ 교통건설국)

라. 주택녹지국 폐지에 따른 부서이관(제15조의2, 제16조)

- 주거재생과,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도시재생녹지국)

- 건축계획과, 도시경관과(→ 도시계획국)

마. 지속 가능한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건축·주택·경관기능 조정(제16조)

- 도시경관과 건축기능 통합(도시경관과 → 도시경관건축과)

- 건축·주택기능 중 주택기능 분리(건축계획과 → 주택정책과)

바. 사무 신설 및 이관(제6조의6,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3)

- (사무신설) 산업재해예방, 고독사예방 및 관리, 시립미술관 건립 및 운영 등

- (사무이관) 인천N방송 운영 지원(미래산업과→문화콘텐츠과) 등

사. 명칭 변경(제6조의6, 제7조, 제13조, 제15조의2, 제16조)

- 교통국 → 교통건설국

- 도시재생건설국 → 도시재생녹지국

- 노동정책과 → 노동정책담당관

- 국제협력과 → 국제협력담당관

- 부대이전개발과 → 캠프마켓과

아. 상수도 행정 여건 변화와 특성에 맞도록 분장사무 신설·조정(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5조의4, 제45조의5, 제46조)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6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14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7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구 역 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7,350	2,430	106	3,249	290	1,251	24
정무직 소계	3	1					2
정무	3	1					2
시장	1	1					
위원장	1						1
상임위원	1						1
일반직 소계	3,816	2,118	99	90	290	1,197	22
1급	1				1		
관리관	1				1		
2급	1				1		
이사관	1				1		
2-3급	3	2	1				
이사관·부이사관	3	2	1				
3급	19	11		1	4	3	
부이사관	19	11		1	4	3	
3-4급	2	2					
부이사관·서기관	2	2					
4급	156	95	3	4	16	37	1
서기관	67	43	3	2	7	11	1
기술서기관	29	13			6	10	
서기관·기술서기관	57	39		1	3	14	
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1			1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	1					1	
5급	623	397	18	10	64	130	4
행정	289	195	14	6	31	39	4
사회복지	2	2					
사서	1					1	
공업	36	10			4	22	
농업	4	4					
녹지	15	6			2	7	
해양수산	4	4					
보건	5	4			1		
간호	1	1					
환경	9	8			1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구 역 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시설	111	68	2	1	15	25	
방송통신	7	5			1	1	
행정·사회복지	10	8				2	
행정·사서	6	1				5	
행정·속기	1		1				
행정·공업	10	3				7	
행정·농업	5	1				4	
행정·녹지	2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3	3					
행정·환경	5	5					
행정·시설	29	24			5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학예연구	4	1				3	
행정·방송통신	2	2					
행정·운전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12*	*4*				8	
농업·수의	2	2					
녹지·환경	1	1					
녹지·시설	1	1					
녹지·녹지연구	1					1	
수의·수의연구	*4*	*1*		3			
해양수산·어촌지도	1					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1					1	
보건·간호	6	6					
보건·환경	1	1					
환경·시설	2	2					
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공업·방송통신	1	1					
행정·녹지·환경	3	1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해양수산·환경	1	1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구 역 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공업·보건·식품위생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행정(임시정원)	1	1					
보건·간호(임시정원)	1	1					
의무(임시정원)	1	1					
행정·보건(임시정원)	1	1					
6급	*1,353*	*875*	*40*	*18*	*107*	*304*	9
행정	*514*	*370*	27	*8*	*38*	63	8
세무	32	30			1	1	
전산	*62*	47	*2*	2	4	6	1
사회복지	11	11					
사서	7	1				6	
공업	112	41			7	64	
농업	15	11				4	
녹지	25	12			4	9	
수의	6	3		3			
해양수산	18	18					
보건	21	19			2		
간호	6	*6*					
환경	30	26			4		
시설	*247*	159	3		*36*	*49*	
방송통신	26	15			5	6	
행정·세무	4	4					
행정·전산	4	4					
행정·사회복지	15	13	1			1	
행정·사서	4	2				2	
행정·공업	5	4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1	1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구 역 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행정·간호	1	1					
행정·환경	*5*	*4*			1		
행정·시설	*18*	*16*			2		
행정·학예연구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시설	19	2	1			16	
녹지·환경	2	2					
녹지·시설	2	1				1	
녹지·녹지연구	2					2	
수의·수의연구	1			1			
해양수산·환경	2	2					
해양수산·어촌지도	6	1				5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2					2	
보건·간호	4	4					
보건·환경	2	2					
보건·보건연구	1	1					
환경·시설	2	2					
시설·방재안전	2	2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보건·간호	1	1					
공업·보건·환경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운전	*15*	*5*	*2*	1	3	4	
간호조무	1			*1*			
위생	*2*	1		*1*			
속기	*1*		*1*				
방호	4	3	1				
토목운영	1					1	
통신운영	3	1	1			1	
전기운영	15	1				14	
기계운영	35	1				34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17	7	1	1		8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구 역 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행정(임시정원)	1	1					
보건(임시정원)	2	2					
간호(임시정원)	1	1					
보건·간호(임시정원)	3	3					
의료기술·약무(임시정원)	1	1					
보건·의료기술·간호(임시정원)	1	1					
7급	*1,333*	*667*	31	*44*	*85*	*500*	6
행정	*439*	*280*	20	*12*	*27*	*96*	*4*
세무	11	10				1	
전산	*41*	*25*		*2*		*14*	
사회복지	*20*	*17*				3	
사서	13	2	1			10	
공업	*166*	32		6	4	*124*	
농업	14	5				9	
녹지	*31*	12			4	*15*	
수의	2	1		1			
해양수산	9	9					
보건	*13*	9		2	2		
간호	3	3					
환경	*24*	*16*	1		3	4	
시설	*220*	*114*	1	2	*31*	*72*	
방재안전	2	2					
방송통신	25	13	1	1	4	6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7	5	1			1	
행정·사회복지	9	7				2	
행정·사서	4					4	
행정·공업	*3*	1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3*	2	*1*				
행정·시설	*23*	*17*			*6*		
행정·방재안전	3	3					
행정·방송통신	*2*	1			*1*		
세무·전산	1	1					
전산·방송통신	3	3					
공업·환경	*5*	*5*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구 역 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공업·시설	18	4				14	
공업·방송통신	1					1	
농업·수의	*2*	*1*		1			
녹지·환경	1					1	
녹지·시설	3	2				1	
수의·수의연구	7	2		4		1	
해양수산·환경	*2*	*2*					
해양수산·시설	1	1					
해양수산·어촌지도	3					3	
보건·간호	3	3					
환경·시설	1	1					
시설·방송통신	1					1	
시설·방재안전	1	1					
보건·약무	1	1					
간호·건축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4*	*4*					
전산·보건·간호	1	1					
운전	*37*	*11*	*2*	7		*16*	1
위생	*1*					1	
속기	*2*		*2*				
방호	6	1		1		4	
전기운영	*24*	2		1		*21*	
기계운영	*45*	1				*44*	
열관리운영	1			1			
화공운영	*5*					*5*	
보건운영	1			1			
사무운영	*50*	*21*		*2*	2	24	*1*
행정(임시정원)	3	3					
전산(임시정원)	1	1					
세무(임시정원)	1	1					
보건(임시정원)	3	3					
간호(임시정원)	1	1					
공업·보건·환경(임시정원)	1	1					
8급	*290*	*65*	4	13	12	*196*	
행정	*79*	*19*	1	3	8	48	
세무	2	2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구 역 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전산	1	1					
사회복지	2	2					
사서	5					5	
공업	76	2		1	3	70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3	3					
보건	5	4		1			
간호	1	1					
환경	*5*	*5*					
시설	49	16			1	32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서	5					5	
행정·보건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1					1	
녹지·시설	1	1					
녹지·녹지연구	1					1	
보건·간호	2	2					
보건·환경	1	1					
운전	8			6		2	
위생	1			1			
속기	3		3				
시설관리	*26*					*26*	
농림운영	1					1	
사무운영	4			1		3	
9급	*28*	*2*	1			*23*	2
행정	4	2					2
사서	1					1	
공업	*1*					1	
시설	2					2	
속기	1		1				
시설관리	*19*					*19*	
전문경력관 소계	7	2	1			4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나군	6	1	1			4	
사진기사	1		1				
나병관리사	1	1					
무대장치사	2					2	
음향기사	1					1	
조명기사	1					1	
다군	1	1					
사진기사	1	1					
특정직 소계	3,291	294		2,997			
소방직	3,291	294		2,997			
소방정	20	10		10			
소방령	97	34		63			
소방경	246	43		203			
소방위	351	60		291			
소방장	455	67		388			
소방교	808	54		754			
소방사	1,314	26		1,288			
별정직 소계	18	11	7				
1급	1	1					
관리관·별정	1	1					
4급	8	2	6				
별정	2	2					
서기관·별정	5		5				
서기관·기술서기관·별정	1		1				
5급	3	3					
비서관	2	2					
국제관계대사	1	1					
6급	3	3					
비서	3	3					
7급	3	2	1				
비서	3	2	1				
연구직 소계	193	6		134		53	
연구관	33			25		8	
수의연구	2			2			
해양수산연구	1					1	
보건연구	10			10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환경연구	11			11			
학예연구	3					3	
공업연구·환경연구	1					1	
보건연구·환경연구	4			1		3	
보건·환경·수의연구	1			1			
연구사	160	6		109		45	
기록연구	2	2					
녹지연구	1					1	
수의연구	9			9			
해양수산연구	7					7	
보건연구	48			42		6	
공업연구	2					2	
환경연구	61			52		9	
학예연구	19	3				16	
공업연구·환경연구	3					3	
농업연구·수의연구	2			2			
보건연구·환경연구	4			4			
학예연구·편사연구	1	1					
해양수산연구·어촌지도	1					1	
지도직 소계	29			28		1	
지도관	5			5			
농촌지도	5			5			
지도사	24			23		1	
농촌지도	23			23			
어촌지도	1					1	
기능직 소계							
9급							

[별표 2] 시본청에 두는 공무원의 실·국·본부별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대 변 인	계		22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3	행정3
		6급	5	행정5
		7급	12	행정9, 공업1, 전기운영1, 기계운영1
	전문경력	다군	1	사진기사1
시민정책 담 당 관	계		*18*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4
		6급	*8*	*행정6*, 시설1, 행정·시설1
		7급	5	행정4, 사무운영1
협치인권 담 당 관	계		*20*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4
		6급	*7*	*행정7*
		7급	8	행정7, 행정·시설1
소통기획 담 당 관	계		19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4
		6급	6	행정5, 사무운영1
		7급	8	행정7, 전산1
남북교류협력 담 당 관	계		11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3	행정3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4	행정2, 행정·시설1, 사무운영1
노동정책 담 당 관	계		*13*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3*	*행정3*
		6급	*5*	*행정5*
		7급	*3*	*행정3*
		8급	*1*	*행정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감 사 관	계		*51*	
	일반직	3-4급	1	부이사관·서기관1
		5급	8	행정6, 시설1, 행정·시설1
		6급	35	행정20, 세무1, 전산1, 사회복지1, 공업1, 녹지1, 환경1, 시설7, 행정·사회복지1, 보건·보건연구1
		7급	*7*	행정6, 행정·사회복지1
기획조정실	계		*362*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3-4급	1	부이사관·서기관1
		4급	*13*	*서기관8*, 서기관·기술서기관5
		5급	*58*	*행정49*, 시설2, 방송통신2, 행정·시설2, 행정·방송통신2, 행정·운전1
		6급	*171*	*행정82*, 세무28, 전산28, 시설11, 방송통신4, 행정·세무4, 행정·전산3, 행정·시설4, *운전5*, 통신운영1, 사무운영1
		7급	*114*	*행정53*, 세무10, *전산17*, 시설5, 방송통신5, 행정·세무2, 행정·전산3, 행정·보건1, 행정·시설1, 세무·전산1, 전산·방송통신1, *운전11*, *사무운영4*
		8급	3	행정1, 세무2
	별정직	5급	*1*	*국제관계대사1*
시민안전본부	계		120	
	일반직	2-3급	1	이사관·부이사관1
		4급	6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4
		5급	21	행정10, 공업1, 시설1, 방송통신1, 행정·시설2, 행정·방재안전2, 보건·환경1, 행정·공업·시설1, 행정·시설·방재안전1, 행정·보건(임시정원)1
		6급	48	행정13, 전산5, 공업3, 농업2, 수의1, 해양수산2, 보건2, 환경3, 시설3, 방송통신5, 행정·전산1, 행정·공업1, 행정·환경1, 행정·시설1, 전산·방송통신1, 공업·시설1, 시설·방재안전2, 행정(임시정원)1
		7급	42	*행정11*, 전산1, 공업1, 보건1, 시설7, 방재안전2, 방송통신3, 행정·방재안전3, 전산·방송통신2, 공업·환경1, 시설·방재안전1, 보건·약무1, *행정·시설·방재안전4*, 행정(임시정원)2, 전산(임시정원)1, 공업·보건·환경(임시정원)1
		8급	2	방재안전1, 방송통신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일자리경제	계		*175*	
본부	일반직	2-3급	1	이사관·부이사관1
		4급	*8*	*서기관4*, 서기관·기술서기관4
		5급	*38*	*행정22*, 공업4, 농업4, 시설1, 행정·공업2, 행정·농업1, *공업·시설1*, 농업·수의2, *수의·수의연구1*
		6급	*74*	*행정39*, 전산4, 공업13, 농업9, 수의2, *시설4*, 행정·공업1, *행정·농업1*, 행정·시설1
		7급	*51*	*행정30*, 공업6, 농업5, 수의1, *시설3*, 행정·시설2, 공업·시설1, *농업·수의1*, 수의·수의연구2
		8급	*3*	*행정2*, 농업1
복지국	계		*85*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5	서기관5
		5급	17	행정11, 행정·사회복지6
		6급	37	행정21, 사회복지7, 시설1, 행정·사회복지8
		7급	*22*	행정10, *사회복지7*, 시설2, 행정·사회복지3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여성가족국	계		9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5	서기관4,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18	행정1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보건·간호1, 행정·보건·간호1
		6급	33	행정22, 사회복지3, 보건1, 시설1, 행정·사회복지3, 행정·간호1, 보건·간호1, 행정·보건·간호1
		7급	31	*행정15*, 사회복지9, 보건2, 행정·전산1, 행정·사회복지3, 행정·시설1
		8급	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행정·보건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건강체육국	계		*122*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5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3
		5급	24	행정4, 보건4, 간호1, 시설1, 행정·보건2, 보건·간호5, 공업·보건·식품위생1, 행정·보건·약무·간호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1, 보건·의무·약무·간호1, 행정(임시정원)1, 보건·간호(임시정원)1, 의무(임시정원)1
		6급	*48*	*행정9*, 보건15, 간호5, 시설3, 행정·보건1, 행정·시설1, 보건·간호3, 보건·의료기술·간호1, 보건·약무·간호1, 보건·의무·약무·간호1, 보건(임시정원)2, 간호(임시정원)1, 보건·간호(임시정원)3, 의료기술·약무(임시정원)1, 보건·의료기술·간호(임시정원)1
		7급	36	행정14, 보건6, 간호3, 시설1, 행정·보건1, 보건·간호3, 간호·건축1, 전산·보건·간호1, 행정(임시정원)1, 세무(임시정원)1, 보건(임시정원)3, 간호(임시정원)1
		8급	7	보건4, 간호1, 보건·간호2
	전문경력	나군	1	나병관리사1
문화관광국	계		*114*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서기관5,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23	행정17, 시설1, 행정·사서1, 행정·보건1, 행정·시설2, 행정·학예연구1
		6급	*44*	행정30, 공업1, 녹지1, 보건1, *시설7*, 행정·사서2, 행정·시설1, 사무운영1
		7급	36	행정26, 전산1, 사서2, 공업1, 시설4, 행정·시설2
	연구직	연구사	4	학예연구3, 학예연구·편사연구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환경국	계		*187*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8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6
		5급	36	행정4, 공업4, 환경8, 시설2, 행정·공업1, 행정·환경5, 행정·시설1, 공업·환경2, 녹지·환경1, 환경·시설2, 행정·공업·환경2, 행정·녹지·환경1, 행정·환경·시설1, 공업·보건·환경1, 공업·환경·시설1
		6급	*74*	행정15, 전산1, 공업14, 환경22, 시설8, 행정·공업1, *행정·환경3*, 녹지·환경1, 녹지·시설1, 보건·환경2, 환경·시설2, 행정·공업·환경1, 공업·보건·환경2, 기계운영1
		7급	*56*	행정13, 공업15, *환경16*, 시설5, 공업·환경3, 사무운영4
		8급	*12*	행정3, 공업1, *환경5*, 시설1, 공업·환경1, 보건·환경1
교통건설국	계		*188*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8*	서기관3,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3*
		5급	*33*	*행정13*, 공업1, *시설12*, 방송통신2, *행정·시설3*, 공업·시설1, 행정·공업·방송통신1
		6급	*82*	*행정34*, 세무1, 전산4, *공업5*, *시설26*, 방송통신5, *행정·공업1*, *행정·시설3*, 공업·시설1, 행정·전산·시설1, 전기운영1
		7급	*58*	*행정18*, 전산1, *공업5*, *시설20*, 방송통신5, *공업·시설2*, 전기운영1, *사무운영6*
		8급	6	행정4, 시설2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행정국	계		*152*	
	정무직	정무	1	시장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서기관5,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23	행정20, 행정·시설2, 공업·시설1
		6급	*54*	*행정35*, 전산2, 사서1, 공업1, *간호1*, 시설5, 방송통신1, 행정·사회복지1, 위생1, 방호3, 사무운영3
		7급	*44*	*행정29*, 전산3, 공업2, 시설1, 행정·전산1, 행정·공업1, 행정·시설1, 행정·방송통신1, 방호1, 사무운영4
		8급	8	행정6, 전산1, 공업1
		9급	2	행정2
	별정직	1급	1	관리관·별정1
		4급	2	별정2
		5급	2	비서관2
		6급	3	비서3
		7급	2	비서2
	연구직	연구사	2	기록연구2
도시재생 녹지국	계		*12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기술서기관4*,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25	*행정1*, *녹지6*, *시설15*, *행정·시설1*, 공업·시설1, *녹지·시설1*
		6급	*39*	*행정2*, *전산1*, *공업1*, *녹지9*, *시설25*, 사무운영1
		7급	*45*	행정6, *녹지12*, *시설24*, *공업·시설1*, 녹지·시설1, 사무운영1
		8급	*5*	*시설4*, *녹지·시설1*
도시계획국	계		*168*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5*
		5급	*36*	*시설29*, *행정·시설7*
		6급	*61*	*행정5*, 전산1, *공업1*, *녹지1*, *시설49*, *행정·시설3*, 녹지·환경1
		7급	*54*	*행정7*, 전산1, *사회복지1*, *공업1*, *시설36*, *행정·시설5*, *공업·환경1*, 녹지·시설1, 환경·시설1
		8급	*9*	*시설9*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해양항공국	계		*97*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5	서기관1,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3
		5급	16	행정5, 해양수산4, 시설3, 행정·시설3, 행정·해양수산·환경1
		6급	41	행정13, 공업1, 해양수산16, 시설8, 해양수산·환경2, 해양수산·어촌지도1
		7급	*31*	행정10, 해양수산9, 시설6, 행정·시설3, *해양수산·환경2*, 해양수산·시설1
		8급	3	해양수산3
소방본부	계		294	
	특정직		294	소방정10, 소방령34, 소방경43, 소방위60, 소방장67, 소방교54, 소방사26

[별표 3] 의회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의회사무처	계		*106*	
	일반직	2-3급	1	이사관·부이사관1
		4급	3	서기관3
		5급	18	행정14, 시설2, 행정·속기1, 행정·공업·시설1
		6급	*40*	행정27, *전산2*, 시설3, 행정·사회복지1, 공업·시설1, *운전2*, *속기1*, 방호1, 통신운영1, 사무운영1
		7급	31	행정20, 사서1, 환경1, 시설1, 방송통신1, 행정·전산1, 행정·공업1, *행정·보건1*, *운전2*, *속기2*
		8급	4	행정1, 속기3
		9급	1	속기1
	전문경력직	나군	1	사진기사1
	별정직	4급	6	서기관·별정5, 서기관·기술서기관·별정1
		7급	1	비서1

[별표 4] 직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인재개발원	계		*36*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3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6	행정5, 시설1
		6급	8	행정5, 전산1, *간호조무1*, 사무운영1
		7급	*14*	행정6, *전산1*, 공업2, 시설1, 운전1, 방호1, 전기운영1, 사무운영1
		8급	4	행정3, 위생1
보건환경연구원	계		176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1
		5급	4	행정1, 수의·수의연구3
		6급	*9*	행정2, 전산1, 수의3, 수의·수의연구1, 운전1, *위생1*
		7급	*25*	행정4, 전산1, 공업3, 수의1, 보건2, 방송통신1, 농업·수의1, 수의·수의연구4, 운전5, 열관리운영1, 보건운영1, 사무운영1
		8급	3	공업1, 보건1, 사무운영1
	연구직	연구관	25	수의연구2, 보건연구10, 환경연구11, 보건연구·환경연구1, 보건·환경·수의연구1
		연구사	109	수의연구9, 보건연구42, 환경연구52, 농업연구·수의연구2, 보건연구·환경연구4
농업기술센터	계		*34*	
	일반직	6급	*1*	*행정1*
		7급	4	*행정2*, 공업1, 시설1
		8급	1	운전1
	지도직	지도관	5	농촌지도5
		지도사	23	농촌지도23
중부소방서	계		303	
	일반직	7급	1	운전1
		8급	3	운전3
	특정직		299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21, 소방위30, 소방장34, 소방교85, 소방사122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남동소방서	계		280	
	특정직		280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19, 소방위23, 소방장38, 소방교72, 소방사121
부평소방서	계		330	
	특정직		330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20, 소방위26, 소방장41, 소방교85, 소방사151
서부소방서	계		456	
	특정직		456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25, 소방위42, 소방장66, 소방교115, 소방사201
공단소방서	계		304	
	특정직		304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20, 소방위26, 소방장35, 소방교81, 소방사135
계양소방서	계		244	
	특정직		244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18, 소방위22, 소방장29, 소방교64, 소방사104
미추홀소방서	계		301	
	특정직		301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20, 소방위26, 소방장36, 소방교78, 소방사134
강화소방서	계		287	
	특정직		287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17, 소방위32, 소방장38, 소방교73, 소방사120
영종소방서	계		243	
	일반직	8급	1	운전1
	특정직		242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18, 소방위25, 소방장28, 소방교50, 소방사114
송도소방서	계		224	
	일반직	8급	1	운전1
	특정직		223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18, 소방위29, 소방장39, 소방교47, 소방사83
소방학교	계		31	
	특정직		31	소방령3, 소방경7, 소방위10, 소방장4, 소방교4, 소방사3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경제자유	계		*290*	
구 역 청	일반직	1급	1	관리관1
		2급	1	이사관1
		3급	4	부이사관4
		4급	16	서기관7, 기술서기관6, 서기관·기술서기관3
		5급	64	행정31, 공업4, 녹지2, 보건1, 환경1, 시설15, 방송통신1, 행정·녹지1, 행정·시설5, 시설·방송통신1, 행정·녹지·환경1, 행정·녹지·시설1
		6급	*107*	*행정38*, 세무1, 전산4, 공업7, 녹지4, 보건2, 환경4, *시설36*, 방송통신5, 행정·환경1, 행정·시설2, 운전3
		7급	*85*	*행정27*, 공업4, 녹지4, 보건2, 환경3, *시설31*, 방송통신4, *행정·공업1*, *행정·시설6*, *행정·방송통신1*, 사무운영2
		8급	12	행정8, 공업3, 시설1

[별표 6]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상 수 도	계		640	
사 업 본 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14	서기관1, 기술서기관3, 서기관·기술서기관10
		5급	56	행정19, 공업17, 시설8, 행정·공업5, 공업·시설7
		6급	149	행정27, 세무1, 전산5, 공업39, 시설16, 방송통신1, 행정·공업1, 공업·시설15, 운전1, 전기운영11, 기계운영25, 사무운영7
		7급	*230*	*행정38*, 세무1, 전산6, 공업53, 환경4, 시설20, 방송통신2, 공업·시설13, *운전11*, 방호3, *전기운영19*, *기계운영39*, *화공운영5*, 사무운영16
		8급	*145*	행정28, 공업66, 시설23, 공업·시설1, *시설관리26*, 사무운영1
		9급	*21*	시설2, *시설관리19*
	연구직	연구관	4	공업연구·환경연구1, 보건연구·환경연구3
		연구사	20	보건연구6, 공업연구2, 환경연구9, 공업연구·환경연구3
도 시 철 도	계		90	
건 설 본 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3
		5급	13	행정2, 공업3, 시설6, 방송통신1, 공업·시설1
		6급	35	행정5, 공업13, 시설13, 방송통신3, 운전1
		7급	31	행정6, 공업8, 시설13, 방송통신3, 공업·방송통신1
		8급	6	행정1, 공업1, 시설4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종합건설본부	계		*17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3
		5급	19	행정4, 공업2, 녹지1, 시설11, 행정·공업1
		6급	*50*	행정8, 공업8, 녹지1, *시설20*, 방송통신1, 운전2, 토목운영1, 기계운영9
		7급	*84*	행정16, *공업23*, 녹지2, *시설28*, 방송통신1, 시설·방송통신1, 운전5, 기계운영5, 사무운영3
		8급	13	행정6, 공업1, 시설5, 운전1
여성복지관	계		15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3
		7급	9	행정3, 전산1, 사회복지2, 공업2, 행정·사회복지1
여성의광장	계		11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7	행정5, 전산1, 공업1
		9급	1	공업1
문화예술회관	계		36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3	행정2, 행정·공업1
		6급	8	행정4, 방송통신1, 통신운영1, 전기운영2
		7급	18	*행정5*, 전산1, *공업9*, 시설1, 전기운영1, 사무운영1
		8급	2	행정2
	전문경력	나군	4	무대장치사2, 음향기사1, 조명기사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인천대공원	계		47	
사 업 소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6	행정2, 녹지2, 녹지·녹지연구1, 행정·녹지·환경1
		6급	*12*	행정1, 공업2, 녹지3, 행정·녹지1, 녹지·시설1, 녹지·녹지연구2, 전기운영1, *열관리운영1*
		7급	*21*	행정4, *공업5*, 농업1, 녹지4, 시설2, 행정·녹지1, 수의·수의연구1, 위생1, 전기운영1, 사무운영1
		8급	6	행정3, 공업1, 녹지1, 녹지·녹지연구1
	연구직	연구사	1	녹지연구1
월미공원	계		22	
사 업 소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3	행정1, 녹지1, 행정·녹지1
		6급	3	행정1, 녹지2
		7급	14	행정3, 공업4, 녹지4, 시설2, 녹지·환경1
		8급	1	행정1
계양공원	계		*22*	
사 업 소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4	행정1, 녹지3
		6급	5	녹지3, 행정·녹지1, 공업·시설1
		7급	*10*	*공업1*, *녹지5*, 시설1, 행정·녹지1, 녹지·시설1, 사무운영1
		8급	2	녹지1, 농림운영1
미 추 홀	계		56	
도 서 관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7	행정1, 사서1, 행정·사서5
		6급	13	행정2, 전산1, 사서6, 공업1, 행정·사서2, 사무운영1
		7급	21	행정2, 전산2, 사서10, 공업2, 시설1, 행정·사서4
		8급	13	사서5, 공업1, 행정·사서5, 운전1, 사무운영1
		9급	1	사서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시립박물관	계		40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1, 행정·학예연구3
		6급	3	행정1, 공업1, 행정·학예연구1
		7급	11	행정4, 전산1, 공업6
		8급	2	행정2
	연구직	연구관	3	학예연구3
		연구사	16	학예연구16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계		20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2	행정·농업2
		6급	*3*	행정1, 농업2
		7급	*14*	행정2, *공업4*, 농업5, 시설1, 행정·전산1, 공업·시설1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계		15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2	행정·농업2
		6급	3	행정1, 농업2
		7급	8	행정1, 전산1, 공업2, 농업3, 시설1
		8급	1	행정1
수산자원연구소	계		22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1
		5급	2	행정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1
		6급	3	행정1, 해양수산·어촌지도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1
		7급	5	행정1, 공업2, 시설1, 사무운영1
		8급	2	행정1, 사무운영1
	연구직	연구관	1	해양수산연구1
		연구사	8	해양수산연구7, 해양수산연구·어촌지도1
중앙협력본부	계		8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2	행정2
		6급	3	행정3
		7급	2	행정2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수산기술지원센터	계		14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1
		5급	2	행정·해양수산1, 해양수산·어촌지도1
		6급	5	해양수산·어촌지도4,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1
		7급	5	공업1, 해양수산·어촌지도3, 사무운영1
	지도직	지도사	1	어촌지도1
서부여성회관	계		14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7	행정2, 전산1, 사회복지1, 공업1, 시설1, 방호1
		8급	3	행정3
아동복지관	계		*8*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별표 7]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자치경찰위원회	계		24	
	정무직	정무	2	위원장1, 상임위원1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4
		6급	9	행정8, 전산1
		7급	6	*행정4*, 운전1, *사무운영1*
		9급	2	행정2

◇개정이유

국가 주요시책사업 기능보강(반려동물보호, 과거사 진실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 산단재생, 고독사 예방,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스타트업파크 업무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시책과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정원 14명 증원(별표1)

- 총 정원 : 7,336명 → 7,350명(14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3,916명 → 3,929명(13명 증)

· 의회사무처의 정원 : 105명 → 106명(1명 증)

나. 일반직 정원 증원(별표 1부터 별표 7까지)

- 일반직 정원 : 3,802명 → 3,816명(14명 증)

· 일반직 3급 정원 : 21명 → 19명(2명 감)

· 일반직 5급 정원 : 621명 → 623명(2명 증)

· 일반직 6급 정원 : 1,343명 → 1,353명(10명 증)

· 일반직 7급 정원 : 1,337명 → 1,333명(4명 감)

· 일반직 8급 정원 : 284명 → 290명(6명 증)

· 일반직 9급 정원 : 26명 → 28명(2명 증)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6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15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인천 스타트업파크 육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제7항제14호 중 “응급의료, 마약류”를 “마약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종청라개발과”를 “영종청라계획과”로, “용유무의개발과”를 “영종청라기반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종청라개발과장”을 “영종청라계획과장”으로, “용유무의개발과장”을 “영종청라기반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종청라개발과장”을 “영종청라계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제14호, 제15호 및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제28호 및 제2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용유무의지역 개발방안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5. 용유무의지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6. 용유무의지역 투자유치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7. 왕산마리나 조성에 관한 사항

제10조제5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국공유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도로, 하천, 공공공지, 유수지 제외)”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공원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원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단위사업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도로, 하천, 공공공지, 유수지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용유무의개발과장”을 “영종청라기반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천대교 경관조명 및 출자에 관한 사항

8. 제3연륙교 건설에 관한 업무

9. 영종·청라국제도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영종·청라국제도시 도로폭 20미터 초과 교통안전시설물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영종·청라국제도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신호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2. 영종·청라국제도시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영종·청라국제도시 교통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4. 영종·청라국제도시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도로, 하천, 공공공지, 유수지에 한함)

15. 영종국제도시 「도로법」 상의 도로(20미터 초과), 공공하수도, 하천, 산림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6. 청라국제도시 「도로법」 상의 도로(20미터 초과), 공공하수도, 하천, 유수지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7. 영종국제도시 공원조성 단위사업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18. 영종국제도시 취락지 정비에 관한 사항

19. 국가위임사무로 별표에 정한 사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서별 국가위임사무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운영지원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1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국유잡종재산의 처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나. 국유잡종재산의 보존유지 관리 및 대부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다.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제42조제1항	
		라. 국유재산의 대장정비·실태조사 및 서류의 열람·복사· 등본 초본의 교부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같은 법 제66조	
		마. 국유재산의 변상금 징수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같은 법 제72조	
		바. 은닉재산 등의 신고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송도기반과	1	국제물류주선업에 사업 등록 등 관리		
		가.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의 등록, 변경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나.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의 승계	같은 법 제45조	
		다.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의 휴지, 폐지	같은 법 제46조	
		라.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의 등록취소, 정지	같은 법 제47조	
	2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7조	
		나. 청문	같은 법 제68조	
		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73조	
개발계획 총괄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계획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1	경제자유구역개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조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나.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같은 법 제14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다.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14조,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2	국가공업단지개발 사업중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업단지조성사업에 관한 다음권한		
		가. 실시계획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나. 실시계획승인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 송부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다.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1조제2항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6조제3항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바.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 검사의뢰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사.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같은 법 제37조제5항	
	3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경미한 개발계획의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나. 변경 내용의 관보 고시		
		다. 관계 서류사본의 지식경제부장관 송부		
	4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승인과 변경승인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승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의 경우는 제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1) 경미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경우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31조	
		2) 자금계획에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국가 지원이 포함된 경우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4호, 제31조	
		3) 조성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의7제2항,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의 관보 고시	같은 법 제10조제1항,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다.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11조제2항,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라. 45만 제곱미터 미만의 단위 개발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변경승인의 관보 고시	같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마. 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및 변경 승인의 관보 고시	같은 법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바. 45만 제곱미터 미만의 단위 개발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및 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11조제2항,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사. 관계 서류사본의 지식경제부장관 송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5	퇴출업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퇴출업종 등에 대한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나. 퇴출업종 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다. 청문 및 대집행	같은 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환경녹지과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	1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등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도시건축과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기반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1	국유재산중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단, 도로·구거·하천유지 제방에 한함)		
		가. 무주부동산의 취득 및 공고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나목	
		나.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법」 제1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라목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다. 소관청지정을 위한 업무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사목	
		라.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자목	
		마. 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차목	
		바.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카목	
		사.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갱신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타목	
		아.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국유재산법」 제3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파목	
		자. 행정재산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국유재산법」 제3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거목	
		차.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너목	
		카.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국유재산법」 제23조	
		타. 국유재산의 대장 ·등기부 등본과 도면의 비치, 실태 조사, 대장의 정비 및 서류의 열람·복사·등본·초본의 교부 청구	「국유재산법」 제66조	
		파. 국유재산의 멸실 보고	「국유재산법」 제70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2호러목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하. 국유재산의 변상금 징수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머목	
		거. 국유재산에 대한 과오납금 및 반환 가산금 반환	「국유재산법」 제75조	
		너. 국유재산내의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버목	
도시건축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	1	가. 석축·옹벽 등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	「연안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나. 쓰레기 또는 폐선을 제거하는 사업	「연안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4호	
		다. 해안 편의점·휴식용 의자의 설치 등 기술적 검토가 필요 없는 사업	「연안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5호	
환경녹지과 (송도국제도시) 영종관리과 (영종국제도시)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	1	사업장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0조제1항	
		다. 측정기기관련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32조제5항, 제6항	
		라. 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마.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의 명령	같은 법 제34조	
		바.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5조	
		사.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같은 법 제36조	
		아.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7조	
		자.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8조	
		차.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40조	
		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타.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련 조치명령	같은 법 제44조 제7항, 제45조 제5항	
		파.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련 기간 연장의 승인	같은 법 제45조제4항	
		하. 보고명령 등 및 검사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	
		거.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85조	
		너.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제3항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료제출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	
	3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가. 과징금의 부과·징수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다. 표지판의 설치	같은 법 제13조제4항	
		라.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	같은 법 제16조	
		마. 자료제출의 요구	같은 법 제17조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법 제25조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가.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나.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	
		다.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2조제3항	
		라.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3조제1항	
	6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나.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같은 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같은 법 제32조3항	
		라.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3조제2항	
		마.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같은 법 제50조	
		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	같은 법 제51조	
		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	같은 법 제52조	
		아. 토지이용제한	같은 법 제54조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자.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61조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68조	
		카. 사후관리 제외대상 시설의 인정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통지	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파. 비용명세서의 수리	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거. 사후관리 이행보험증서의 수리	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너. 담보물의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더.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및 차액 반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러.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머.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버.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발급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서.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어.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같은 시행령 제35조제2항	
		저.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8	하수와 분뇨의 처리		
		가. 허가의 취소 등	「하수도법」 제30조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80조	
	9	먹는물 관리		
		가.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	「먹는물관리법」 제31조	
		나.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승인 등	같은 법 제32조	
		다. 먹는샘물제조업자 부담금증명표지 사용제한	같은 법 제34조제3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10	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지정 및 지정취소	「관광진흥법」 제6조 및 제35조	
	1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 징수권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원상복구비의 징수	「산지관리법」 제19조	
도시건축과	1	항공장애등 설치검사 및 사후관리 (지상고 150m 이상의 건물 시설물)	「항공법시행규칙」 제247조 제1항	

◇개정이유

영종청라사업본부 기능재편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한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천 스타트업파크 육성 및 운영·관리 사무 신설(제7조)

나. 영종청라사업본부 기능재편(제10조)

- 제3연륙교 건설, 영종·청라국제도시 주차장 및 교통(교통영향평가, 신교통 업무 제외)에 관한 사항: 영종청라개발과 → 영종청라기반과
- 영종·청라국제도시 도로(20미터 초과), 공공하수도, 하천, 산림, 유수지, 국공유재산(도로, 하천, 공공공지, 유수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영종관리과, 청라관리과 → 영종청라기반과
- 용유무의지역 개발 및 투자유치, 왕산마리나 조성에 관한 사항 : 용유무의개발과 → 영종청라계획과

다.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한 부서명칭 변경(제10조)

- 영종청라개발과 → 영종청라계획과
- 용유무의개발과 → 영종청라기반과

훈 령

인천광역시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21년 6월 24일

인천광역시훈령 제1230호

인천광역시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 폐지규정

인천광역시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가 전자화 되었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법원 등의 행정정보, 등기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하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각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유지·보존·취급의 책임을 지고 있어, 유명무실하게 존치되어 온 규정을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을 폐지함.

인천광역시우리고장을빛낸얼굴휘장수여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21년 6월 24일

인천광역시훈령 제1231호

인천광역시우리고장을빛낸얼굴휘장수여규정 폐지규정

인천광역시우리고장을빛낸얼굴휘장수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우리시 우리고장을 빛낸 얼굴 휘장 수여 제도는 현재 행정환경 여건상 현실성이 없어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1982년 12월 1일 제정된 이래 유명무실하게 존치되어 온 규정을 폐지함.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우리고장을빛낸얼굴휘장수여규정」을 폐지함.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197호

승강기 사업자 유지관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처분 공고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제한)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인천지방법원 조정권고안에 따라 “처분 취소”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22.

인 천 광 역 시 장

○ **행정처분 내역**

처분대상자			처분 변경사유 (조정 권고일)	기존 처분내용 (처분일)	변경 처분내용 (처분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인천-6280000-**-00호	티케이 엘리베이터(주) 인천지사 (서**)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번길11, MK타워 ***,***,***호 (가정동)	인천지방법원 조정권고 (2021.6.3.)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통보 (2020.4.3.)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처분취소** (2021.6.22.)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771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 6. 22.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등록 사항 : 대표자 변경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소재지	대표자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13-0-인천 광역시-31	(사)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인천 연수구 청량로 184번길 17	정재훈	민창기	2021.6.2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780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지방세징수법」제71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매대상 재산(자동차) : 15거2039 등 69대 (붙임목록 참조)

2. 공매일정

가. 입찰신청(등록)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21.7.13.(화) ~ 2021.7.20.(화) 14:00

○ 은행 가상계좌 부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입찰참여 마감 당일은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 30분전에는 입찰참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 및 매각결정은 입찰 마감 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

나. 입찰참여 마감 : 2021.7.20.(화) 14:00

※ 14:00 이후에 입찰보증금이 입금된 입찰자는 입찰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다. 입찰결과 발표 : 2021.7.21.(수) 14:00

○ 인천시보 및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홈페이지 게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시보⇒압류자동차 공매결과 공고 클릭)

3. 공매방법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 방식 적용

나. 공매장소 :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

4.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가.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채권 (지방세징수법 제81조)

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 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⑤「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⑦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나. 배분요구종기일 : 2021.7.20.(화) 18:00

5. 입찰참가 및 등록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입찰신청 후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입찰서와 공매보증금은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을 변경하거나 취소 및 반환할 수 없음).

나. 선택 차량에 대한 입찰자격은 다음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매각예정액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됩니다.

※ 주의 : 은행 업무시간외에는 입금이 안 될 수 있으며 은행사정상의 미 입금은 미납 처리됩니다.

- 공매보증금 납부(입금)계좌 : 입찰신청 후 입금계좌번호 자동부여 (입찰신청 후 [공매+입찰자명]으로 은행의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공매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최종 완료한 후 보증금의 총 합계액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정상처리 됩니다.
- 입찰 후 입금하기 전까지는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총 합계액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을 한 후에 추가 입찰할 경우에는 가상계좌가 추가 발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추가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입금합니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매각결정일 부터 3일 이내(공휴일이면 익 일)에 환불됩니다.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결정 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6. 낙찰자 결정기준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단독입찰 가능)

나.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

다. 체납자 등 「지방세징수법」제77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

7. 매수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 일부터 7일 이내

가.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 절차(7일 이내)를 거친 후, 해당차량은 재 공매 조치합니다.

나. 매수대금 입금계좌는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는 상이하며 낙찰시 우리 시(공매 담당자)에게 입금계좌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 등록한 입찰자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는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예- 아파트 동, 호수가 없는 경우 등)

8.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 차 공매최저가격

9.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의 취소

가. 공매진행 중 또는 낙찰 완료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된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 등을 은행 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고 배분계산서 작성 전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나. 매수대금(잔금)을 납부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 공매물건의 인도절차 및 권리이전 비용

가. 매수대금 납부 후 우리 시(공매 담당자)에게 공매물건 이전 등록지를 통보하고 납부 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입니다.

나.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록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등 또한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정기검사를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 부터 15일내 검사를 받는 등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자동차보관소에서 인도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마. 직권말소 자동차는 말소부활 → 검사 → 신규 등록 등의 절차 이후 이전등록이 가능하며, 이전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의 책임아래 각종 공부확인 및 자동차보관소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자동차 점검서는 자동차 상태 및 중고차 시세 등을 감안하여 (주)오토마트에서 작성하며,「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 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차령 10년 초과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점검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 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등록 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완납한 때에는 즉시 인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지방세법」의 취득, 등록세 과세대상의 구입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 신용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예) 매각결정통지서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 공제 시에도 비공개 (전 차주의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

다. 공매물건 점검과정에서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안전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 소유권이전 시 기존 번호판으로 이전등록 하시고. 번호판이 없는 경우(분실)에는 해당등록 관청에서 신규(전국)번호판으로 재교부 바랍니다.

마. 차량 유의사항!! 필독하시어 차량상태 및 등록기관 확인 후 입찰에 신중하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바. 낙찰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최고납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 소유권이전등록 후 보관소에서 차량인수 시 필히 번호판 부착 및 봉인 후 출고하시기 바랍니다.(번호판 미 부착 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

아. 차량 보관 장소 : (주)오토마트 보관소 (☏ 032-578-0442)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통합징수팀 자동차공매 담당 주무관 박은영(☏ 032-440-8445, 84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공매 차수	인도일
1	15거2039	라세티	2010	490,000	4회	2020-06-16
2	04무0959	모닝	2016	1,200,000	3회	2020-10-19
3	15마1945	CHEVROLETIMPALA3.6	2017	10,400,000	3회	2020-09-28
4	93거6042	이-마이티	2008	4,000,000	3회	2020-09-25
5	10서6171	SM7	2007	450,000	2회	2021-01-14
6	15나3011	현대제네시스(GENESIS)	2011	2,700,000	2회	2021-03-02
7	15모8048	에쿠스(EQUUS)	2010	3,600,000	2회	2021-01-18
8	17우7606	SM5	2013	2,250,000	2회	2021-02-26
9	26수4279	크루즈1.8DOHC	2011	630,000	2회	2021-02-01
10	54러6635	액티언	2008	360,000	2회	2021-01-18
11	86도3586	포터II(PORTERII)	2011	630,000	2회	2021-02-16
12	01저5542	레조2.0SLPGAT	2004	300,000	1회	2021-03-30
13	04서3841	Passat2.0FSI	2006	500,000	1회	2021-03-25
14	04어8458	BMW750Li	2006	800,000	1회	2021-03-24
15	05저8775	AUDIA61.8T	2001	500,000	1회	2021-03-30
16	06러6197	그랜저(GRANDEUR)	2006	500,000	1회	2021-04-14
17	08다7468	트라제XG	2003	400,000	1회	2021-04-16
18	11모6895	쏘나타	2012	1,000,000	1회	2021-04-01
19	18저1477	K7	2013	6,000,000	1회	2021-04-13
20	19서6497	토스카1.8DOHC	2008	400,000	1회	2021-03-24
21	20다9878	코란도C	2013	2,500,000	1회	2021-04-06
22	21부8857	NEW그랜저XG(NEWGRANDEURXG)	2004	400,000	1회	2021-04-02
23	25너4932	포르테	2011	1,000,000	1회	2021-04-07
24	25다1203	NEW그랜저XG(NEWGRANDEURXG)	2003	400,000	1회	2021-04-16
25	26너2404	테라칸(TERRACAN)	2003	400,000	1회	2021-03-25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공매 차수	인도일
27	27서2172	스타렉스장축9인오토	2002	400,000	1회	2021-03-24
28	28부5231	링컨LS	2005	500,000	1회	2021-04-15
29	32우5828	BMW750Li	2006	800,000	1회	2021-04-13
30	36마5323	싼타페(SANTAFE)	2004	400,000	1회	2021-04-15
31	38모2257	SM5	2010	1,000,000	1회	2021-04-13
32	38우0513	BMW	2000	500,000	1회	2021-04-07
33	39로2306	아반떼오토메틱	1997	200,000	1회	2021-03-23
36	40누3435	BMW 120d	2010	2,000,000	1회	2021-04-06
35	40라2919	체어맨	2005	500,000	1회	2021-03-24
36	46머2186	토스카2.0DOHC	2008	400,000	1회	2021-04-02
37	46어0702	A42.0TFSIQuattro	2011	2,000,000	1회	2021-03-26
38	47소6548	체어맨	2006	500,000	1회	2021-03-25
39	48무5627	로체	2009	500,000	1회	2021-03-24
40	48버7801	카렌스베타2.0	2001	250,000	1회	2021-04-15
41	48어8686	아반떼	2009	500,000	1회	2021-03-26
42	51누7296	로체	2006	300,000	1회	2021-03-23
43	51저8723	Golf2.0TDI	2012	3,500,000	1회	2021-03-30
44	54너2250	쏘나타(SONATA)	2012	1,000,000	1회	2021-04-12
45	54오6947	마티즈0.8SAT	2005	300,000	1회	2021-03-26
46	56누7104	SM3	2002	200,000	1회	2021-03-31
47	56더2469	그랜저(GRANDEUR)	2014	7,500,000	1회	2021-04-07
48	57라0546	제네시스(GENESIS)	2014	6,000,000	1회	2021-03-23
49	59라5823	모닝	2014	2,000,000	1회	2021-03-25
50	59우6077	체어맨W	2009	1,000,000	1회	2021-04-08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공매 차수	인도일
51	60라4761	트라제XG	2002	400,000	1회	2021-04-02
52	62도1085	스포티지	2012	3,500,000	1회	2021-04-05
53	64더2761	쏘울	2009	500,000	1회	2021-04-08
54	66수2765	K7	2010	1,000,000	1회	2021-04-14
55	67어2777	에쿠스(EQUUS)	2014	9,000,000	1회	2021-04-14
56	68머2538	테라칸(TERRACAN)	2003	400,000	1회	2021-04-09
57	81무1548	봉고Ⅲ1톤	2013	3,000,000	1회	2021-04-08
58	86구6733	스타렉스(STAREX)	2005	500,000	1회	2021-04-02
59	86두5039	포터Ⅱ냉동탑차(PORTERⅡ)	2010	1,000,000	1회	2021-04-07
60	86두6342	포터Ⅱ냉동탑차	2012	2,500,000	1회	2021-03-31
61	86오7731	봉고Ⅲ1톤	2012	1,500,000	1회	2021-03-26
62	89노6452	봉고Ⅲ1.2톤	2011	2,000,000	1회	2021-03-26
63	89라1153	레토나밴	2002	400,000	1회	2021-04-02
64	96소9328	봉고Ⅲ1톤	2016	5,000,000	1회	2021-04-14
65	인천31모7165	레조2.0S LPG AT	2001	250,000	1회	2021-03-30
66	인천33노3886	아반떼엑스디	2001	250,000	1회	2021-03-25
67	인천33라5060	라노스1.5	1998	200,000	1회	2021-03-30
68	07누3107	렉스턴	2006	500,000	1회	2020-09-23
69	82어5612	화인7.9kL버큠로리	2010	10,000,000	2회	2021-02-0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21-136호

2021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 명령 후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1. 6. 2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 목 : 2021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공고기간 : 2021. 6. 22. ~ 2021. 7. 13.
3. 대상자(송달)

연번	건축주 (행위자)	건축물 현황				부과(예고) 금액	내용	반송 사유
		대지위치	구조	용도	면적(㎡)			
1	천경섭	청라동 8-35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25	3,940,000	무단 증축	폐문부재

4. 통지내용

대상자	통지 요지	철거 기한 (의견제출 기한)	비고
천경섭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후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021. 7. 13.	

5.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032-453-7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북부수도사업소공고 제2021-665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51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를 소유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2. 법적근거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5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체납 및 압류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1. 6. 23. ~ 7. 7. (15일간)

5. 안내사항

○ 상기 처분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시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6. 의견제출 기관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북부수도사업소 요금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67(계산동), ☎ 010-9704-0254)

7. 의견제출 기한 : 2021. 7. 7.(수) 18시까지

붙 임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대상 1부.

2021. 6. 22.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북부수도사업소장 [관인생략]

[붙임]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대상

연번	수용가 현황			체납기간(월)	체납금액(원)	압류대상자(소유자) 및 압류대상			비고
	고객번호	수용가명	수용가 주소			성 명	주민등록등본상(법인등기부상) 주 소	압류물건	
1	237 -060460	곽#연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3번길 #-3, 5동 #01호(청천동, 창#주택)	´20. 9, ~ ’21. 4.	247,190	현#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3번길 #-3, 5동 #01호(청천동, 창#주택)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3번길 #-3, 5동 #01호(청천동, 창#주택)	등기 반송 (폐문 부재)
2	237 -012856	오#식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6번길 #8, 30#호(부평동, 중#아파트)	´18. 2, ~ ’21. 4.	48,480	오#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비룡길#3번길 #, 3층(용현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6번길 #8, 30#호(부평동, 중#아파트)	등기 반송 (폐문 부재)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78호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창업 관계자 등과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통·협의 기구 부재로 어려움이 있어 상생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나. 인천의 창업인프라 조성 시 소통기구인 상생협의회 설치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인천의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생협의회 설치 근거 및 심의·자문사항을 명시함(안 제14조)

나. 상생협의회 구성 및 위촉 분야,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함(안 제15조)

다. 수당지급 대상을 추가 명시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투자창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지웰시티푸르지오 오피스동 인천광역시청 투자창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정연(전화032-440-3282, FAX 032-440-8631, 이메일 yjhesti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서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상생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한 의견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창업지원시설 공간 구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과의 친화 공간 조성 및 시설이용에 대한 사항
3.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간 민원 등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창업지원기관 운영자 및 창업 전문가, 창업자
2.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의한 청년

3.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시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 본문 중 “위원회 회의”를 “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민관 상생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상생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한 의견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창업지원시설 공간 구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과의 친화 공간 조성 및 시설이용에 대한 사항 3.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간 민원 등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 설>	제15조(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창업지원기관 운영자 및 창업 전문가, 창업자 2.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청년 3.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시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 ---------- ---------- ---------- ---------- ---------- ---------- ----------.
제15조 ~ 제21조 (생략)	제17조 ~ 제23조 (현행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5.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3(창업촉진사업) 법 제4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2. 창업 관련 정보 제공
3. 창업 공간 지원
4. 시제품 제작 지원
5. 창업자의 판로 지원
6. 창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79호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2020. 12. 29.) 및 시행 예정(2021. 6. 30.)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이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대기오염관리에 시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안 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7. 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5, 팩스 440 -8765, 이메일 iamng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에 다른 배출허용기준 중 강화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배출허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16조(배출허용기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1. 6. 30.]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5조 및 제77조에서 같다)·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2. 5. 23., 2019. 4. 2., 2020. 12. 29.>

④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부칙 <제1779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⑤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20. 12. 29.>

⑥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20. 12. 29.>

⑦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 5. 23., 2020. 12. 29.>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적 예산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변경 시 설문조사, 공청회 등에 따른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 환경국 대기보전과장 라덕균